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vol. 22, no. 2, 2016 (99-107)

ISSN 1225-8857(PRINT) / ISSN 2288-9493(ONLINE)
http://dx.doi.org/10.7851/ksrp.2016.22.2.099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제도 도입에 관한 인식 특성 비교

김성학 • 서정원 • 조한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복지연구과 •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조경학 박사과정

Comparison of Recognition on Introduction of Forest Welfare Service Voucher System

Kim, Seong-Hak • Seo, Jeong-Weon • Cho, Han-Sol*
Dept. of Forest Welfare,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Korea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uversity*

ABSTRACT : Forest service government has been prepared a Forest welfare voucher service system base on published law on th Promotion Welfare Fores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study on domestic situation and set on direction of voucher service before started it. In particular, voucher service will be implemented to Forest service government's recreation facilities area, awareness of voucher service system of its users and operators need to be reveal, and also other government's similar voucher operator's opinions also investigate. From those results, it find out introduction factors of forest welfare services voucher system. Recognition investigating survey result shows that the ordinary people are interested in programs, the forest recreation experts are interested in 'Construction and utilization of forest infrastructure', other voucher's experts are interested in 'Training', and ordinary people are interested in 'voucher programs'. So each respondents' results are different in important factors of introducing welfare service voucher system.

Key words : Forest Welfare Policy, Voucher Service, Recognition Comparison Research

I. 서 론

산림복지 서비스에서 이용권 제도는 산림 복지 인프라 확장으로 인한 수요 창출과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고려에서 출발된 개념이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권 제도 도입을 통해 산림복지 서비스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게 이용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제도가 기존 타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용권 제도와 차별화되는 되는 내용은 산림 인프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산림청은 지금까지 유사한 제도를 실행한 경험이 없으며, 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대상 범위나 정책 방향과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설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다수의 서비스 이용권 제도는 실행하기에 앞서 많은 연구와 논의를 통해 제도 도입을 위한 내용을 검토해왔다. 고용노동부의 교육훈련바우처의 경우 이종훈과 한국노동 연구원(1998)에서 연구해 1998년 9월부터 시범운영을 마친 뒤 정책이 실시되었고,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바우처 제도는 2007년 정부에서 시행하기에 앞서서 최재성(2000)에 의해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바우처 도입방안을 모색했었다. 문화관광부의 여행바우처와 문화바우처 또한 김향자와 유지윤(1999)과 김현주(2004) 등 문화관광연구원의 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 이후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처럼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중앙기관의 서비스 이용권 제도 대부분은 연구를 통해 도입여건과 방향을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다양한 접근 방식 및 실행에 관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했던 이유는 서비스 이용권 사업의 특성상 일방적으로 국민에

Corresponding author : Cho, Han-Sol
Tel : 02-880-5643
E-mail : joil0705@gmail.com

게 제공되는 복지 사업과는 다르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요자의 선택이라는 부분이 고려되기 때문이다. 이는 서비스의 질과 내용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이 좌우될 수 있는, 소위 시장경제적인 여건 검토가 선행되어야 서비스 이용권 제도의 성공적인 실행을 가늠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제도의 도입 방안에 관하여 조한솔 외(2014)가 타 분야 바우처를 운영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적 방향을 모색한 사례는 있지만 이후에 실제로 산림복지 이용권을 운영해야하는 운영자와 사용하는 이용자 면에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산림복지서비스의 경우 타 분야의 서비스와는 달리 제공되는 서비스에 수반되는 물리적 여건이 제한적이다. 이용권 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대상은 산림휴양시설이고 산림휴양서비스를 위한 인력은 외부조달이 아닌 산림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인력과 시설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조건의 특성상 서비스 내용이 광범위해 질 수 있는 다른 서비스 이용권 제도에 비해 대상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넓지 않으며 분명하게 정해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권 제도를 운영하는 산림청의 경우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제도의 운영에 관한 경험이 없고, 수혜자인 국민들의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편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정책 도입과 실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제도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무엇에 중점을 두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인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제도의 차별성을 만들지 못한다면 제도의 실행이 수혜자뿐만 아니라 제공자의 입장에서도 유명무실한 제도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제도 도입을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 성공적인 제도로 출발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수혜자와 제공자 그리고 유사하게 서비스 이용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관계자가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과 각 주체들의 인식에 어떤 차이점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제도의 도입에 있어 운영과 이용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II. 이론 고찰

1.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제도

산림복지 이용권은 제도적으로 「산림복지진흥법」에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기본으로 사업 내용적 범위를 정하는데 이 내용은 '생애주기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과 산림복지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며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산림복지 진흥법의 제2조 4항과 5항을 토대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가 산림복지 이용권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산림복지 서비스는 이 법령에 따르면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주로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이 제공처가 된다. 산림복지 이용권은 산림복지 소외자가 각종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수량이 기재된 증표를 의미한다. 그 외에 산림복지 서비스의 이용권의 범위와 수혜자기준, 내용은 다음 <Table 1>과 같이 정해진다. 산림에서의 휴양림 이용과 산림 교육을 위주로 하는 내용이 산림복지 바우처 발급에 주된 내용으로 현재 해당 인력은 대부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은 2016년 7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데 대상은 저소득층으로 1인당 제공 금액은 10만원 정도, 목표인원은 9000명이 되어 총 사업비 정도로 밝히고 있어 순수하게 이용자에게 돌아가는 사업비만 9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은 그 내용적 범위가 휴양림에 안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휴양림의 경우 현재 이용에 대한 비용 지불이 필요한 부분은 입장료, 주차료, 시설 이용요금, 산림 문화 프로그램 체험료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산림청에서 그간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을 위해 입장료, 시설 할인 면제를 실시해 왔고 소외계층을 위한 활동을 해왔지만 공식적으로 공표한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은 나눔 객실사업이 유일했다. 이는 휴양림 객실의 3%인 19개를 소외계층에게 우선 배정하는 형태로 소극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제도로 운영되고 있었다. 하지만 나눔 객실 사업의 경우 본 연구를 실행하기 위한 사전조사에서 이루어진 이용객 인터뷰에서 나눔객실 지정된 시설 안쪽까지의 휠체어를 위한 교통배려가 완전하지 않아 이용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운영자 입장에서도 소외계층의 이용이 거의 이루어지고 않아 사업은 있지만 거의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현재 산림청에서는 나눔객실의 사업은 산림복지이용권 사업의 초기 형태의 사업으로 보고 이를 포함한 전체적인 소외계층의 이용을 위한 환경을 만들기로 한 것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 제도로 보고 있다. 따라서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 제도에서 제공하는 내용은 좀 더 넓은 소외계층을 포괄하고 있고 제공

Table 1. Forest service welfare voucher applicable laws and contents

Classification	Applicable laws	Contents
Service facilities	「FORESTRY CULTURE AND RECREATION ACT」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Natural Recreation Forest(자연휴양림), Forest Bath(삼림욕장), Healing Forest(치유의 숲),trails(숲길)
	「FOREST EDUCATION PROMOTION ACT」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Toddler wood experience forest(유아숲체험원), Forest Training center(산림교육센터)
Service provider	「FOREST EDUCATION PROMOTION ACT」Second paragraph of article 2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2호	Forest Commentary(숲해설가), Forest infant Instructor (유아숲 지도사), Trails Experience Instructor(숲길체험 지도사)
	FORESTRY CULTURE AND RECREATION ACT」Second paragraph of article 1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 11조의 2	Forest Healing Instructor(산림치유 지도사)
Service voucher Beneficiary	「ENFORCEMENT FOREST WELFARE ACT」article 24 「산림복지진흥에관한법률」제 24조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decide requirement of voucher application and issue 이용권 신청 및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력으로 정함	1. Isolated person from forest welfare(산림복지 소외자) 2. Relative of isolated person from forest welfare(산림복지 소외자의 친족) 3. A legal representative of isolated person from forest welfare(산림복지 소외자의 법정대리인)
Service provider Disclosures	「ENFORCEMENT FOREST WELFARE ACT」article 25 「산림복지진흥에관한법률」제 25조 The contents of the disclosure, methods, procedures, matters and necessary for the revision is decided by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공개의 내용·방법·절차, 공개내용의 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	1. Forest Welfare Services certification status(산림복지서비스 인증 현황) 2. Forest Welfare Services provider status(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의 현황) 3. Providers' service quality, performance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실적 및 품질)

서비스 또한 물리적 인프라 뿐만이 아니라 교육, 체험 등의 상품까지 포함해 확충하게 될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것이다.

2. 타기관의 서비스 이용권 제도 내용 및 실행 체계

바우처 사업은 공공정책의 수단으로서 정부가 제공하고자 하는 특정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지불인증권으로서 그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일정한 구매력을 제공해주는 보조금이라고 정의된다(정광호, 2007). 현재 국내에서 정부가 보조금 형태가 아닌 바우처 사업의 형태를 선호하는 이유는 바우처 사업이 국가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수요자에게 줄 수 있고, 국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바우처 사업에 포함시켜 서비스 질을 향상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바우처 사업은 통일된 법체계가 없고 부처마다 다른 법체계 아래에서 시행중이기 때문에 각 서비스를 부르는 명칭이 다르고,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규모와 종류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의 바우처를 대상으로 한 바우처 사업평가(국회예산정책처, 2013) 결과를 살펴보면 6개의 부처가 18개의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재정규모는 2013년도 기준 6조 8,669억 원이다. 정부재정으로는 17개의 사업이 시행되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재정으로 1개 사업(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중앙부처 이외에 광역자치단체 및 시·군 등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우처 제도 등을 포함한다면 재정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바우처 사업은 공공기관과 특정 서비스, 그리고 개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현물급여, 재화, 상품권을 요소로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주관하는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중요한 것은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려는 내용과 유사한 바우처의 사업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서비스의 내용과 중복적인 혜택을 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의 내용과 가장 유사한 바우처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내용적으로는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이 휴양림을 이용을 전제로 하고, 그 성격상 숲 관련 프로그램, 숙박이용 프로그램 등이 배치될 것이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바우처를 선정해 그 내용과 실행구조를 살펴보았다. 먼저 보건복지부와 시·군이 같이 운영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 안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돌봄 여행서비스, 두 번째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광공사

가 함께 운영하는 여행바우처, 마지막으로 국립공원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태나누리 바우처'등이 내용적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도출된 3개의 바우처 제도를 대상으로 세부적인 내용과 체계를 검토한 결과'생태나누리 바우처'가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었으며 체계에 있어서도 타 국가기관과의 연계성을 배제하고 있어 산림청이 독자적으로 산림복지 바우처를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유사한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본 연구의 관계자 인식조사에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었다(Table 2).

III. 연구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제도 도입에 관하여 서비스의 수혜자가 되는 일반인, 산림복지서비스의 제공 대상이 되는 산림휴양시설 관계자,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제도와 유사하게 서비스 이용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유사한 서비스 이용권 제도를 선정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 이용권 제도의 내용과 수행 체계를 검토하고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집단 선정을 하였다. 일반인은 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Table 2. Other government service system and contents

Voucher name	Operation model	System Feature	Implication on to forest welfare voucher
Electronic Voucher (Social welfare Servi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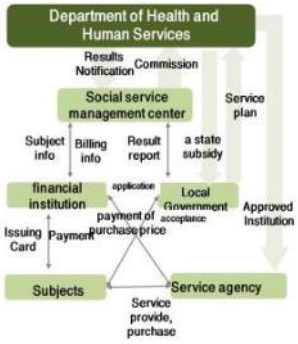	Data organization operate separately, Banking service system support issue of voucher card and payment system Model will be an integrated national voucher	After imposing integration Voucher, participants and payment system will be shared As one of region autonomy social service forest voucher can be connected
Tourism Voucher		Korea Tourism organization has own integration operating systems Tourism voucher budget consist of tourism funding and region funding	Forest voucher program related with tourism voucher courses(forest voucher meet with purpose of tourism funds)
Eco sharing Voucher		National Park Authority raise own recruiting sponsors for funding Providing eco sharing program by utilizing existing program	Program details are able to utilization on forest voucher program If Forest service operate the voucher alone, this system will be applicable

일반인으로 선정하였고, 대표적인 산림휴양시설인 국공립 자연휴양림을 운영하는 운영관계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자의 선정 이후 인식 특성을 수집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산림복지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항목들과 산림복지 이용권 서비스 제도 도입 방향에 관한 의견 수렴 등으로 크게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과 일부 세부적인 경향 파악이 필요한 항목은 7점 리커트척도로 구성하였다. 설문 항목은 산림복지서비스에 관련된 일반인과 산림 휴양시설 관계자의 인식 정도를 조사를 위해 2013년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수행한 '산림복지 국민인식 파악을 위한 조사'에 사용된 설문 구성요소를 기초로 설계하였다. 필요성과 효용성에 관한 문항은 '녹색기금 운영 프로그램 사후평가 설문지' 내용을 참고하였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바우처 프로그램의 내용을 참고하여 세부 항목을 구성하였다(Table 3). 설문대상은 산림휴양시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휴양림 방문객 200명(유명산자연휴양림 170부, 산음자연휴양림 30부)을 일반인의 대표 표집군으로 설정하였고, 유사 서비스 이용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환경부 생태나누리 바우처 운영관계자 20명, 휴양림 운영 관계자 64명(산림휴양 산림·휴양시설 관계자 24부, 유명산 운영진 25부, 산음 운영진 15부)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 기간은 2014년 5월~7월까지 면대면 설문조사를 원칙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부 직접 응답이 어려운 운영관계자의 설문은 추후 방문수거 및 우편수거를 통해 설문 결과를 수집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는 일반인과 휴양림 운영 관계자 사이의 견해 차이가 있는 내용과 유사 바우처 운영 관계자, 휴양림 운영 관계자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는 항목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적인 연구의 흐름은 <Table 4>과 같다.

Table 4. Flow of re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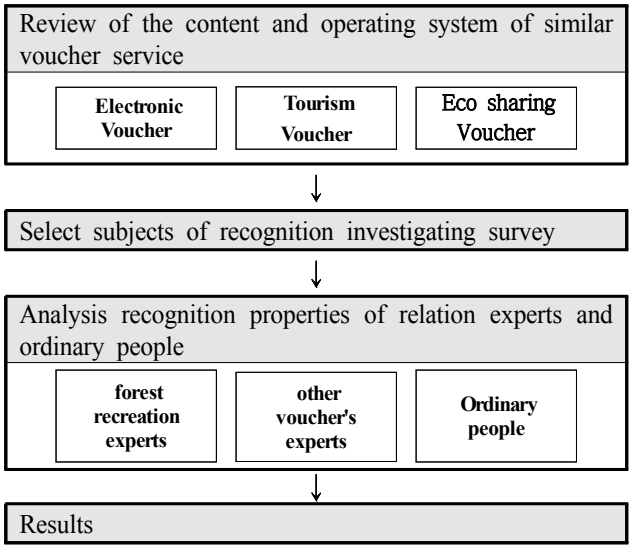

IV. 결과 고찰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도입에 앞서서 제도에 관련한 인식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자연휴양림 방문객, 자연휴양림 운영관계자, 타기관의 바우처 운영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수행되었으며,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5>와 같다.

1. 일반인과 산림휴양시설 운영관계자의 인식 비교

일반인과 산림휴양시설 관계자가 서비스 이용권 제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일반인은 28.9%, 산림휴양시설 관계자는 72.58% 응답하여 산림휴양시설 관계자의 서비스 이용권 제도에 관한 인식이 일반인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 제도를 도입할 경우 이용의 측면에서 일반인들이 서비스 이용권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Table 3. Contents of question

Categories	Subject	Question contents
Forest welfare voucher service recognition	Ordinary people Forest recreation experts	knowledge about voucher service?
Forest welfare voucher Necessity and efficiency	other voucher experts Forest recreation experts	Other voucher's(eco sharing voucher) necessity, efficiency Forest voucher's necessity, efficiency
Forest welfare voucher program and management	Ordinary people other voucher experts Forest recreation experts	program preference as voucher Service? Priority of arrangements factor when introducing vouchers

Table 5. Survey general information

Ordinary people (200 Persons)	Gender	Male	48.0%
		Female	52.0%
	age	under 20	1.0%
		20s	8.5%
		30s	30.2%
		40s	28.6%
		50s	22.1%
		over 60s	9.5%
	Education	under middle school	3.5%
		High school	23.5%
		University	57.5%
		Graduation school	15,5%
Other voucher experts (20 Persons)	Gender	Male	50.0%
		Female	50.0%
	age	under 20	0.0%
		20s	10.0%
		30s	85.0%
		40s	5.0%
		50s	0.0%
		over 60s	0.0%
	Career	under 1 year	15.0%
		1~3years	30.0%
		3~5years	10.0%
		5~7years	5.0%
		Over 7years	40.0%
Forest recreation experts (64 persons)	Gender	Male	70.3%
		Female	26.6%
	Age	under 20	17.2%
		20s	10.9%
		30s	25.0%
		40s	36.0%
		50s	6.2%
		over 60s	0%
	Career	under 1 year	40.6%
		1~2years	17.2%
		2~3years	12.5%
		3~5years	11.0%
		5~7years	7.8%
		Over years	6.3%

때문에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Figur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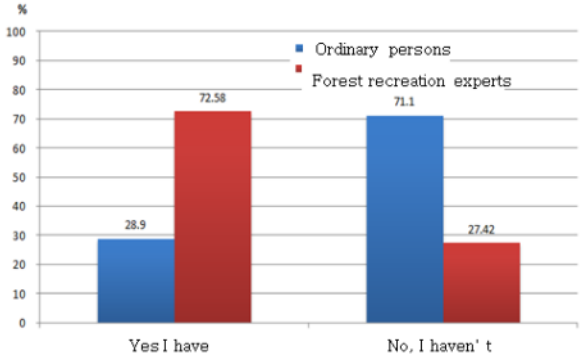

Figure 1. Voucher program awareness

서비스 이용권 제도에서 도입하는 프로그램 유형을 건강치유 프로그램, 관광 시설 및 프로그램, 생태·자연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산림관련 직업교육 프로그램 등 4가지로 가정하고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인 평균이 5점 만점에 운영 관계자는 3.66점, 일반인은 3.77점으로 휴양림 운영관계자가 운영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문항들을 살펴보면 산림·휴양시설 관계자 응답이 가장 긍정적으로 나온 프로그램은 관광시설 및 프로그램 바우처(평점 3.82점)이며 다음은 건강치유 프로그램(평점 3.77)으로 도출되었다. 일반인의 경우 건강치유 프로그램(평점 3.92)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생태·자연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평점 3.91)가 높게 나타났다. 도출된 결과를 볼 때 일반인은 주로 프로그램을 위주로 한 서비스 프로그램의 선호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운영관계자는 운영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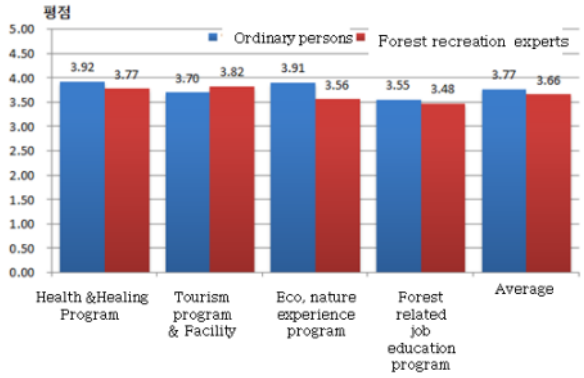

Figure 2. Preference of programs as Forest welfare voucher Service

한편, 사회복지시설에서 단체로 산림휴양시설을 방문한 사회적약자(시각장애인)를 대상으로 인터뷰 방식의 인식조사가 일부 수행되었다. 설문에 구성되어 있는 4가지 프로그램 유형에 대해 인터뷰한 결과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건강치유 프로그램, 관광 시설 및 프로그램, 생태·자연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은 5점 만점에 5점으로 매우 높은 필요성을 보이는 반면, 산림관련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항목에서는 1.75점으로 일반인의 3.55점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약자(시각장애인)에게는 산림휴양시설이 단순한 이용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신체적 장애요소에 기인하여 산림관련 직업교육은 불필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서비스 이용권 제도(바우처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인터뷰 대상자 모두가 알고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현재 서비스 이용권 제도의 혜택을 인터뷰 대상자 모두가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가 4명으로 제한적으로 수행되어 경향적인 측면만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교한 조사를 통해 보다 세부적인 인식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휴양림 운영 관계자와 유사 서비스 이용권 제도 운영 관계자의 인식 비교

운영관계자 인식 비교는 유사 바우처 운영 관계자의 경우 운영하고 있는 바우처의 프로그램의 운영필요성 및 효율성에 관한 항목과 운영 및 개선에 관한 항목들을 질문하였다. 또한 산림복지서비스 바우처에 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도입 필요성과 도입시 우선사항에 대한 문항은 유사바우처 운영진과 휴양림 운영 전문가 공통으로 실시하여 두 집단 간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먼저, 시행되고 있는 바우처 제도 운영의 필요성에 관한 항목에서는 꼭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 갔는지의 여부, 바우처 제도의 운영으로 사회적으로 기여를 많고 있는지에 관하여 대부분의 응답 요소가 7점 만점에 6점대를 상회하며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바우처 제도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문항의 평점이 6.9점으로 바우처제도의 운영 지속성에 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3). 운영 효율성 항목에서는 홍보, 모객, 기금마련, 예산, 인력, 인프라에 대한 사항을 문항으로 제시하였다. 홍보 항목의 평점은 5.25점으로 긍정적이긴 하지만 타 문항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고, 운영기금의 효율성 또한 5.25점으로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인력을 효율성에 있어서 가장 낮은 4.6점으로 응답되었는데,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인력의 부족에 기인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바우처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항목에서는 평점 6.1점 정도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4). 지속 필요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비교해 볼 때 필요성에 비해 운영의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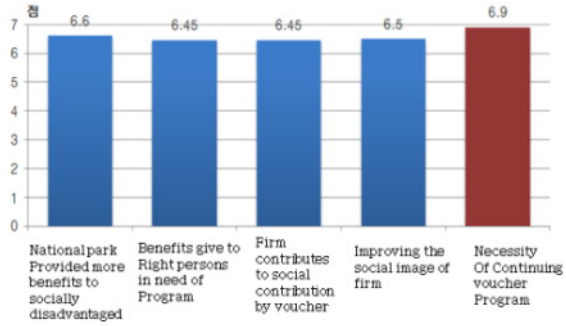

Figure 3. Other voucher's(eco sharing voucher) necessity of ope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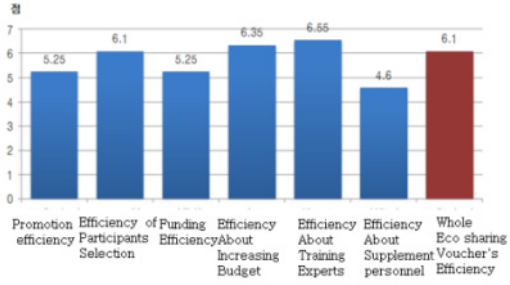

Figure 4. Other voucher's(eco sharing voucher) efficiency

유사 서비스 이용권 제도에서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관련한 내용은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 접근성, 내용구성, 목표를 잘 추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문항으로 제시하였다. 준비에 관한 문항으로 행사 장소 및 프로그램 진행 장소로의 접근성 항목에 평점 5.95로 프로그램 진행사항 설문 문항 중 최하점으로 응답해 접근성에 대한 문제를 가장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서비스 이용권 제도의 프로그램 진행이 잘 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은 평점 6.45점으로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5).

프로그램 개선방향은 대상별 특화 프로그램, 사회적 약자 구분 프로그램, 전문 지식교육, 운영매뉴얼 등 4가지 사항이 개선된다면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향상될 것인가 질문하였다. 국립공원 특성별(평점 6.3)보다는 사회적 약자 대상, 수준별로 차이(평점 6.45)를 두는 쪽을 더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 한편 현재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인력에게 사회적 약자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은 평점 6.5점으로 대답해 4가지 개선 사항 중 교육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는 평점 3.5점으로 전체적으로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ur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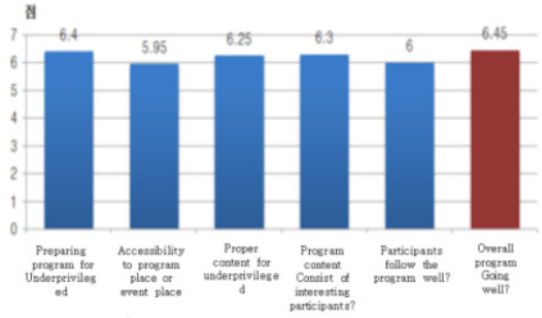

Figure 5. Eco sharing program prog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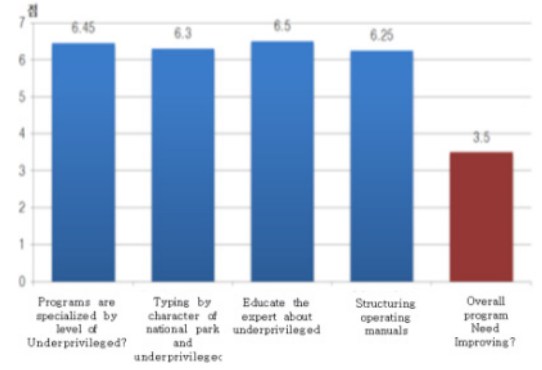

Figure 6. Eco sharing program improvement

서비스 이용권 제도 도입시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응답은 유사 서비스 이용권 제도 운영관계자는 인력양성(2.29), 인프라 정비(2.79), 기금확보(2.86), 전문 프로그램 도입(3.21), 홍보(4.43) 순으로 응답하였다. 휴양림 운영 전문가는 기금확보(2.15), 인프라 정비(2.25), 인력양성(3.06), 전문 프로그램 도입(3.25), 홍보(4.29) 순으로 응답하였다. 유사 서비스 이용권 제도 운영관계자와 비교해 보았을 때 휴양림 운영 관계자는 기금확보에 더 우선순위를 두었고, 유사 서비스 이용권 제도 운영관계자는 인력양성에 더 우선순위를 둔 차이가 있는 결과를 볼 때 인프라 정비는 모두 동의하는 우선과제임을 알 수 있었다(Figur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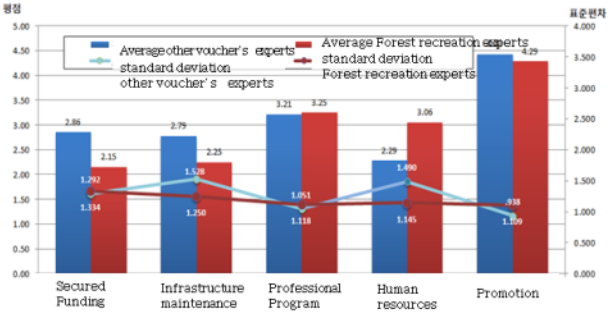

Figure 7. Priority of arrangements factors of introducing vouchers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인식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요약 정리해보면 첫째, 일반인에게는 서비스 이용권 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산림복지 이용권 제도 도입시 준비된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인식 부족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제도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제도의 준비 과정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서비스 이용권 제공 내용에 대한 조사는 일반인은 물리적인 인프라보다 치유, 건강,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제공을 더 선호하였고,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물리적인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을 선호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제도가 산림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의 준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유사 서비스 이용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 관계자는 질 높은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기금확보와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높은 필요성을 이야

기 하였다. 이는 이용권 제도 수혜자의 요구를 수렴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 약자 대상에 맞춘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결과도 이용자의 요구에 대응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휴양림을 운영하고 운영 관계자들은 서비스 이용권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 인프라 정비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결과가 유사 서비스 이용권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운영관계자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력양성을 우선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발생하는 현상 또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제도를 준비과정에서의 정책의 우선순위 판단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서비스 이용권 제도는 제공자의 입장이 아니라 수혜자의 측면에서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준비되어야 하며 유사하게 서비스 이용권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운영관계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개선점을 충분히 수렴해야 만족도가 높은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산림복지 이용권 제도가 도입되어 시범 운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와 유사한 바우처 운영관계자, 산림 휴양시설 일반 이용자, 산림 휴양시설 운영관계자의 집단에게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에 대한 인지, 프로그램의 필요성, 효용성 등의 인식을 조사해 이용권 제도의 도입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무엇인지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빈도 분석 외에 기술적 통계를 통한 집단간의 분석을 시도하였지만 이들 간의 유의미한 차이점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이는 집단 간의 인식특성이 전체적으로 상이하기 보다는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는 결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와 관련한 후속 연구에서는 바우처 프로그램의 기초설계를 통해 실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제도의 수혜대상인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바우처 프로그램의 이용가치와 효용성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Park, H. Y. 2013. Voucher Business Assessment,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 Kim, H. J. Yu, J. Y. 1999. Introduction Tourism Voucher policy, Korea Culture&Tourism Policy Institute
3. Kim, H. J. 2004. A study on an Operation Methods of the Tourism Voucher System, Korea Culture& Tourism Policy Institute
4. Jung, K. H. 2007. An Analysis of Voucher Programs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37(23): 117-138.
5. Cho, H. S., Seo, J. W., Kim, S. H. 2014. A study on the Direction of Forest Welfare Service Voucher System by Grounded Theory.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20(4): 113-125.
6. Choi, J. S. 2000. Feasibility and Tasks of the Voucher System for the Social Service Settings.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2: 153-172.
7. Lee, J. H. 1998.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Conducting Training Voucher Card System. Department of Labor
8. Kora Labor Institute. 1998. Introduction of Training & Education Voucher System

- Received 18 April 2016
- First Revised 18 May 2016
- Second Revised 25 May 2016
- Finally Revised 26 May 2016
- Accepted 26 May 2016